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449

발의연월일: 2022. 1. 17.

발 의 자:이원택·최인호·위성곤

홍정민 · 주철현 · 장경태

윤준병 • 안호영 • 김정호

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이 법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소장, 시설이용,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 및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시험소에 두는 소장과 공무원 관련 조항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이 알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있음.

이에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및 시설이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소장의 임명 기준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하며, 법률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면서 이 밖에 제도상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안 제3조 및 제4조)

"참작"을 "고려"로, "유사한"을 "비슷한"으로 바꾸어 법률의 내용을 국민이 알기 쉽게 함.

나.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범위 명확화(안 제5조)

현재 수행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동물에 대한 전염병·질병 진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기함.

다. 동물위생시험소장의 임명 기준 명확화(안 제6조)

시험소장은 1명을 두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시험소장의 자격 중 가축 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 종사 경력 기간(8년 이상)을 새로이 마련 함.

라. 시험소 시설 이용 업무범위 명확화 및 이용자 범위 확대(안 제7 조)

시험소 시설 이용 업무범위를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에 관한 연구와 검사로 명확히 하고, 시설 이용자의 범위를 "수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수의·축산·환경 분야 관련인"으로 확대함.

마. 과태료 기준 상향(안 제11조)

동물위생시험소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

법률 제 호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유사명칭"을 "비슷한 명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유사한"을 "비슷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가축질병의 방역, 진단, 검사, 시험, 조사, 연구 또는 가축방역사 지도"를 "가축전염병(가축질병을 포함한다)의 진단· 검사·시험·조사·연구와 가축방역사에 대한 지도·감독·교육 등 가축방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반려동물의 전염병·질병 진단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실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동물의 전염병·질병 진단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소장"을 "소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생"을 "위생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④ 시험소 또는 지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 중 "동물·축산물에 관한 연구"를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연구"로, "수의·축산 연구분야"를 "수의사·의사·치과의사·한 의사·약사와 수의·축산·환경 분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유사한"을 "비슷한"으로, "1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임명된 소장에 대하여
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소의 설치) 특별시장ㆍ광	제3조(지소의 설치)
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그 관할구	
역의 가축 사육두수·업무량·	
지역적 여건 등을 <u>참작하여</u> 필	<u>고려하여</u>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시험소의 지	
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u>유사명칭</u> 의 사용금지) 이	제4조(<u>비슷한 명칭</u> 의 사용금지) -
법에 따른 시험소가 아닌 자는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유	
<u>사한</u>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비슷한
제5조(업무) ① 시험소는 다음 각	제5조(업무) ①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	1
른 가축질병의 방역, 진단, 검	<u>가축전염병(가축질병을 포</u>
사, 시험, 조사, 연구 또는 가	함한다)의 진단·검사·시험·
<u>축방역사 지도</u> 에 관한 사항	조사 • 연구와 가축방역사에
	대한 지도·감독·교육 등 가
	<u>축방역</u>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4. (생략)

② (생략)

- 제6조(소장 등) ① 시험소에 소장 | 제6조(소장 등) ① ------소장 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② 소장은 가축방역 및 축산물 ② ------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중에서 시 · 도지사 가 임명한다.
 - ③ (생략)

<신 설>

제7조(시설이용) 시험소는 <u>동물·</u> 제7조(시설이용) -----<u>가축방</u> 위하여 수의・축산 연구분야 관련인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 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의・축산・환경 분야-----

- 4.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 3에 따른 반려동물의 전염병 •질병 진단 및 같은 법 제2 조제4호에 따른 동물실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야생동물 의 전염병ㆍ질병 진단에 관한 사항
- 6. (현행 제4호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1명-----.
- 위생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축방 역과 축산물 위생----.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시험소 또는 지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축산물에 관한 연구와 검사를 역과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연구------수의사·의사 ·치과의사·한의사·약사와 수